

2022학년도 용진중 학업성적관리규정

2022. 3.

용 진 중 학 교

I 목적

본 규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1.17.)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중학교에서 적용할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 제정의 기초가 되게 하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방침

-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수행평가 100% 교과는 제외)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과정·수업·평가·학교생활기록의 유의미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과목별 학기 단위 성적 총점의 40%¹⁾ 이상으로 하고,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 중심 수업에 맞는 과정중심형 수업밀착 평가를 실시한다.
※ 교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지필평가 실시가 어려운 과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지필평가의 횟수는 학기당 2회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교과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70% 이상²⁾인 교과
 - 시수가 적은 교과(1단위)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수행평가 실시가 어려운 학교(과목)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행평가 없이 지필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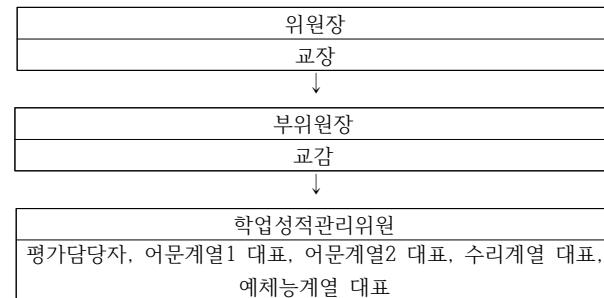
1)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2)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교육청의 별도 지침에 따라 '40%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8.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친인척)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소규모 학교 등)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9.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별지6]을 참조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고 학기 초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10. 성적관리의 부적정 사례 및 비교육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연수 및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에 노력한다.
 11. 학업성적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실정에 맞게 교과협의회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III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운영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다.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단, 교감이 배치 되지 않은 학교는 보직교사가 부위원장장을 대행한다.
- 라.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한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 가. 교육평가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인다.
- 나.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 학교생활기록부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상시 운영한다.
- 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 출석으로 개의한다.
- 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관련 자료와 함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고,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관련자료 및 회의록 스캔하여 첨부)를 얻은 후 시행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 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나.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시기·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 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라.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 후속조치)
- 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사.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지침 이외의 세부사항 심의(가산점 부여 항목, 기준, 가산점 부여 대상자 심의 결정 등)
- 아. 자유학기 및 연계학기의 활동평가 기준 및 방법
- 자.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4. 교과협의회(소규모 학교 학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가. 교과(학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교과군별로 구성한다.

교과협의회	교과
어문 계열1	국어, 도덕
어문 계열2	사회, 역사, 영어
수리 계열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예체능 계열	음악, 미술, 체육
선택과목 계열	한문, 생활중국어

- 나. 교과(학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 1)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 2)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 3)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난 문항 유무 상호 점검
 - 4)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5) 기타 교과 관련 업무
- 다. 교과(학년)협의회는 상시 운영(학기당 2회 이상)하고 협의록을 비치한다.

IV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1.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는 '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2.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3.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은 각 학교·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도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4.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재공지한다.
5.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교내대회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6. 모든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사전에 교직원 연수를 통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유의사항 등 평가 전반 내용에 대하여 교직원간에 충분히 논의한다.
- * 중학교 3학년 2학기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후기고 내신성적산출 기준일 이전까지 입력 마감한다.
7. 지필평가 고사원안, 문항정보표의 양식과 작성 방법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일치시켜 안내하고, 결재 과정에서 확인하며,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한다.
8.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V 지필평가

1. 평가문항 출제

- 평가문항 출제에 관한사항(출제범위, 시험시간, 공동출제, 공동채점, 기타 등)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반드시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의록으로 남긴다. 또한 평가 운영 기간(출제, 시행, 채점 등) 중에는 교무실, 인쇄실, 평가관리실 등을 학생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관련 보안규정과 시험지 유출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문제는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별지4, 별지12 참조]
- 평가문제는 타당도·신뢰도·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문항정보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교사별로 문항수를 분담하여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일 학년·교과를 2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때에는 담당 교사 간 협의를 통한 공동출제로 학급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또한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문항수를 적절하게 출제하고, 문항당 배점(소수점 배점 등) 및 채점기준 세분화에 유의한다.
- 모든 출제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판되는 참고서(자습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2)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다시 출제하는 일

3) 추측에 의하여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4)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5) 고사원안 출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문제의 정답을 암시하는 일

6) 사전에 출제 예상 문제를 유인물로 배부하거나 가르쳐 주고 출제하는 일

7) 평가 관련 자료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평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되는 일

- 지필평가 중 서답형 총 배점 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되,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다.

* 서답형 : 기존의 주관식 문제를 말하고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이 있음

사. 서술(논술)형 문항은 국어, 사회(역사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경우 지필평가 총 배점의 20% 이상, 도덕 교과는 지필평가 총 배점의 10% 이상 출제하며, 이외의 교과는 가급적 서술(논술)형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다만, 지필평가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논술형 평가를 수행평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배점은 학기당 과목별 총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지필평가에서는 서답형(단답형, 완성형)의 비율을 고시별 총 배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때 채점 기준표(답안, 유사답안, 부분점수 등 점수 부여 방법 등)를 완전하게 갖추어 정확한 채점이 되도록 한다.

* 학기단위 지필평가에서 서술(논술)형 배점은 총 배점의 20%(평균)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 1차지필 서술형 20% + 2차지필 서술형 20%

1차지필 서술형 10% + 2차지필 서술형 30%

1차지필 서술형 0% + 2차지필 서술형 40%

아. 서답형 문제는 문항정보표에 문항별로 채점 기준을 명시하되, 문항당 배점을 다양화하고 부분점수 부여에 유념한다.

자. 문항정보표는 NEIS에 있는 양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내용영역, 성취기준(내용 혹은 성취기준 번호), 난이도, 정답, 문항별 배점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NEIS에서 입력할 수 없는 채점기준표 등은 학교단위로 양식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차. 과목별로 제출한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을 평가담당교사, 평가담당부장, 교감 등이 철저하게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교사에게 통보하고 수정·제출하도록 한다.

카. 과목별 평가 영역별 비율과 평가 방법[별지2]은 전라북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참조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다.

* 과목별 평가영역 비율($100\% = \text{지필평가 반영비율} + \text{수행평가 반영비율}$)

<예시> ○○과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		○○%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	○○○○	○○○○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반영비율	○○%	○○%	○○%	○○%	○○%
기본점수	0점	0점	○점	○점	○점

* 과목별 수행평가의 기본점수는 평가영역별 영역만점의 10~40%를 권장함.

2. 고사 관리 방법

가. 평가문제 인쇄 및 관리

1) 과목 담당교사가 출제한 고사 원안은 소정의 결재 과정을 거친 후 관리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2) 평가관련 교직원은 고사 원안의 결재, 보관, 인쇄 등의 전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학교장은 정기고사 일정 발표 후부터 정기고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출제장소, 인쇄실, 평가관리실(교무실) 등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며 철저한 보안 장치를 마련하고 보안 및 인쇄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특히 인쇄관리 담당자는 평가대상 학생의 부모 및 친인척이 아닌 직원으로 지정한다.

* 평가관리실이란 평가기간 동안 보안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곳(특별실, 교무실 등)을 말함.

- 4) 출제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검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포장·봉인하고 여분의 문제지와 함께 평가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 나. 고사 시행
- 1) 정기고사 시행에 있어서는 고사감독, 채점, 입력, 확인 등의 모든 과정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 2) 정기고사 시정표상에 문답지 배부 및 유의사항 전달시간 5분을 반드시 배정한다. 특히 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답안지 표기를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답안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장 또는 교무실에서 입회인 입회하여 훠손된 답안지 내용과 동일하게 새 답안지에 옮겨 기록한다.
 - 3) 감독교사는 가능한 동일교사가 동일고사실에 중복 배치되지 않도록 배정하며, 담임교사의 자기 학급 시험감독 배정 및 교사와 자녀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학생의 학급 감독 배정을 배제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도록 감독을 배정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독교사를 교체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고사 시행전에 반드시 평가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고사감독 배정표에 반영하고 평가담당교사가 고사 전 또는 후에 결재를 득한다.
 - 4) 가급적 1학급을 2개 이상 고사실로 분반하여 실시, 고사실 당 2인 감독 배치(학급당 18명 이상인 경우 필수사항³⁾), 학부모 시험 감독 보조, 복도감독 배치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시험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 5) 감독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사 시간 종료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학급담임교사와 감독교사는 답안 작성 요령과 지정된 필기도구 사용법을 사전에 지도해야 하며, 답안 표기 내용 정정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6) 시험 시작 전 감독교사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수거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7) 감독교사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학교규칙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 후, 감독을 엄정하게 한다. 또한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금하고 답안지의 확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한다.
 - 8) 출제교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과목 평가시간에 감독을 배정하지 않고 교무실에서 대기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한다. 만일 고사 도중 출제문제에 오류가 발견되면 고사 진행시간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오류 문제를 정정하여 고사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 시험 시간을 연장하고 고사 종료 후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이를 알린다.
 - 9) 감독교사는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응시현황(재적인원, 응시인원, 결시자수, 결시자 명단 및 결시 사유 등)을 파악하여 답안지 표지(답안지 회송용 봉투)의 소정란에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하여 평가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 10) 평가담당 교사는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답안지를 출제자(교과담당 교사)에게 인계하여 채점하게 한다.
 - 11) 가급적 고사 당일 정답을 발표하되, 서답형 문제는 채점 기준, 인정(유사)정답 및 부분 점수를 함께 공개한다.
- * 중학교 3학년 2학기 지필평가는 후기고 내신성적산출 기준일 이전까지 입력 마감한다.
- 다. 채점 및 답안지 처리

3)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교육청의 별도 지침에 따라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음.

- 1) 정기고사 답안지의 채점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장의 승인 없이 지정장소 이외로의 반출을 자제한다.
- 2) 답안지의 수기 채점 시에는 정·오답 표시를 하고, 채점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유무를 2검 확인하되 교사를 달리한다. 또한 정·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내용이 가려지거나 훠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3) 답안지를 전산 처리할 경우에는 서답형 문항에 정·오답 표시를 하고, 채점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여부를 2검 확인하되 교사를 달리한다. 또한 정·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내용이 가려지거나 훠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4)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담당 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과담당 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고, 이의 신청이(성적 결과 확인 후 3일간)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8 참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필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5) 서답형 답안지 채점 시는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채점 과정에서 유사정답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에서 채점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채점기준표를 다시 결재 받고 채점에 적용한다.
- 6) 고사일정,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의 내용은 결재 후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결재 절차를 거친 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물을 근거로 채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담당교사는 수정전·후의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 7) 성적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정기고사 결과물(답안지, 고사일정, 문항정보표, 서답형 채점기준표 포함)은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5년간(성적 처리 완료 시점부터 5년) 보관하여야 한다.

VI. 수행평가

1. 수행평가 방법
 - 가. 구성적 반응 요구형: 논술형 문항, 도표나 그림에 제목 붙이기, 시각적 자료 만들기(개념 도나 흐름도, 그래프나 표, 도안 등)
 - 나. 특정 산출물 요구형 : 수필, 실험·실습, 이야기·극본, 시(poem), 포트폴리오 미술작품, 과학 프로젝트, 모형(model)구성, 비디오·오디오구성
 - 다. 특정 활동 요구형 :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구두발표, 무용·동작발표, 과학실험 시연, 체육 경기, 연극, 토의·토론, 음악발표
 - 라. 과정 표현형 : 구두질문, 관찰, 면담, 회의, 과정(process)에 대한 기술, 생각하는 과정을 말로 표현(think aloud), 학습 일지
2. 수행평가 시행
 - 가.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비율, 수행평가 세부 기준(배점), 기본점수의 부여 등은 과목별·평가영역별 비율에 맞게 교과협의회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나.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수행평가의 대상, 시기, 내용, 처리방법, 평가 기준, 미응시자 처리기준 등)을 학교 홈페이지나 유인물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사전 안내한다.
 - 다. 수행평가 계획 수립·운영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학교와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 재구성, 학생 참여형 수업 등 다양한 수업상황 안에서 흥미, 자기 효능감, 참여, 협력, 배려, 경청, 책임, 실천, 동기, 가치 등의 평가 요소를 적절하게 설정 반영될 수 있도록 구안하고, 지식보다는 역량을, 수행 결과만이 아닌 수행 과정이 평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 중학교 3학년 2학기 수행평가는 후기고 내신성적산출 기준일 이전까지 입력 마감한다.
- 2)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학습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 3)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정기고사 시간에 지필형 수행평가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국 시·도 차원의 영어 듣기평가는 예외로 하되, 관리감독에 민전을 기한다.
- 4) 특정 기간에 교과별로 수행평가가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적정화한다.
- 5) 예·체능 교과는 이론, 기능, 감상, 미적체험, 이해, 지식 등에 대한 반영비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여 실기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역은 수업 시간 내에 제작된 작품 및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6) 모둠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노력 정도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7) 자유학기 중에는 교과별 성취수준을 확인하고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관찰 평가,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등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 8) 전·출입 학생 발생 시 전출학교는 전출일까지의 수행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전입학교에서는 전출학교에 수행평가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라. 평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성적 결과 확인 후 3일간)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8 참조]
- 마. 학교 수행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행평가 인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기 수행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바.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을 반영하되, 기본 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사. 지체장애 및 감각장애(시각, 청각)로 인하여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의 경우 성적처리 방법은 일반학생과의 형평성·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되 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시>

* 기본 점수가 있는 영역의 경우

점수 = 해당영역 수행평가 기본점수

$$+ \text{ 해당영역 수행평가 배점(기본점수 제외)} \times \frac{\text{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text{지필평가의 배점 총점}}$$

* 기본 점수가 없는 영역의 경우

$$\text{점수} = \text{해당영역 수행평가 배점} \times \frac{\text{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text{지필평가의 배점 총점}}$$

* 국어와 외국어의 말하기·듣기 평가도 이에 준하여 적용

- 아. 수행평가 결시자에게는 1회의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평가 처리 기준(결시자 포함)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학생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적용한다.
- 자.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⁴⁾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 자료
- 4)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 학생들의 이의신청·점수·처리·확인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 기록(성적일람표 등)을 의미

로 제공할 수 있다.

- 차. 수행평가 결과물(미술작품 등)은 학생들의 이의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당해 년도 학기말에 폐기하도록 한다. 단, 가사 실습 등 무형으로 되는 것은 제외 한다.
- 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타. 학습독서 활동 결과물의 수행평가 반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독서를 활성화하고, 모든 교과에서 각 교과 수행평가 총점의 30% 내외를 교과 관련 독서 실적으로 반영 권장한다.
 - 학교별, 학년별, 교과별로 평가 요소를 다양하게 정하여 실시한다.
 - 반영 방법: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파. 국어과의 독서평가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를 권장하되, 반영비율 및 실시여부는 국어과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VII 인정점 부여

- 1.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감염병, 병원입원 등에 의하여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별지 7]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를 따르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한다. 본 치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학기 내에 지필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인정점 반영비율과 반영기준은 [별지 7]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되 일반학생과의 형평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3. 학기 도중에 전입한 학생은 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성적이 있을 때는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없을 때는 전입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전입 이전의 성적으로 반영하되 인정점 부여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 수행평가의 경우, 재취학, 전·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처리 방안을 평가 계획에 포함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원적교 성적을 유사한 영역 평가의 성적으로 인정 가능
- 4. 유예, 면제, 유급 등의 사유가 끝나 재취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될 경우에는 재취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VIII 학업성적 결과 처리

- 1.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성취도(수강자수)와 원점수/과목평균을 산출한다 (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만을 산출). 단,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체육·예술계 중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 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 2.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을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은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

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과목별 성적일람표 작성 '예시'>

2022학년도 제1학기
국어과 성적 일람표
제1학년 ()반 교과담당교사()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명칭·영역 (반영비율)	1차 (30%)	2차 (30%)	○○○ (10%)	◇◇◇ (10%)	□□□ (10%)			
번호, 성명									
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	95	A(452)
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	71	C(452)
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		
학급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		
과목 평균							82.1		

- '김길동'의 지필평가 1차 환산점수 28.50($30 \times 95 / 100 = 28.50$)은 100만점에서 95점을 받았을 때이며, 수행평가 ○○○ 환산점수 8.80($10 \times 44 / 50 = 8.80$)은 50점 만점에서 44점을 받았을 경우이다.
- 수강자 최고점, 수강자 최저점, 수강자 평균, 학급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성적일람표 합계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원점수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 과목 평균은 수강자 점수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며,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행평가 점수 30점, 반영비율이 20%이고, 학생이 28점을 받은 경우 환산점수는 18.6666…의 무한 소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적절히 설정하여 무한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교과(목)별 평가 계획상 최종 시험일(2차 고사)이며, '명예졸업' 학생은 중학교의 경우에는 유예·면제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 3.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4.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다만, 자유학기 (학년)에 해당 교과 담당교사별로 해당 과목의 평가 계획을 다르게 수립한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수강자 수를 달리할 수 있다.
5. 재취학, 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유예, 면제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학생(명예졸업, 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원점수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성적처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각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으로 정하여 인정 점을 부여함.
 - *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 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140('21.10.29.)참조).
 - ※ 「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아동복지시설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고, 재적교(지필·수행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7.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성적 처리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전라북도교육청의 「2022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학기말 성적)에 반영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원적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국가 및 타시·도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도 원적교의 평가에 응시해야함)
 - 나. 학생과 보호자, 위탁교육기관에 지필 및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계획 및 절차(고사기간, 평가방법, 응시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여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다. 과목별 수행평가 미응시(또는 미참여)에 대한 성적 처리(기본 점수 부여 등)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 라. 원적교에서 지필고사 기간 및 응시에 대하여 안내를 했음에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 처리(인정점 부여 등) 등 이 지침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8.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성적 처리
 - 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학력 인정과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에 의한다.
 - 나. 조기 진급자의 2학년, 조기 졸업자의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란은 공란으로 두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인정 평가 결과만 각각 2, 3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란에 기입한다.

9. 소년원학교 이수학생의 성적 처리(별지13 참고)

- 가. 소년원학교 이수학생의 학적 및 학업성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 1) 재학생의 소년원학교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2, 제65조,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등을 관리한다.
- 2)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는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 가능함)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3)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 [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자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 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나.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미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위의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의 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 '가~미'항 이외의 사항은 [별지13] 참고

10.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가.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

2) 출결

가)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 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및 「2022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3) 성적

가) 성적처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및 「2022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과 보호필요 학생의 성적처리(별지13 참고)

1) 학적: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2) 출결

가) 출결은 소속학교의 담임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의 출결 확인서에 따른다.

나) 해당일의 수업일수와 출결내용은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과 소속학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출결 처리함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결석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393호)」 [별표8](출결상황 관리 등) 및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3) 성적

가) 성적은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소속학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4) 기타

가) 각종 비교과 영역: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나) 교육정보 시스템: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12.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면제, 유예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재취학, 전·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가. 재취학, 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 한다.

나.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다.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한다.

라. '가~다'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마.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393호)' 제4조 및 그 해설에 따라 전 출일자까지 원적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하여 전송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교과학습별달상황(성적포함),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는 정리하여 전입학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전입 학생의 이전 학년도 자료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한다. 다만,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

14.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나.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다. 재취학, 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라. '가~다' 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15.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가.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나.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학생에게는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문제지(11 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다. 지체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마.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IX 출결상황 관리

1. 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 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변동(면제·유예·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취학·편입학·전입학 등) 일 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마. 전입학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전입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2.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로 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현역병 지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지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증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11) 학교장은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위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

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파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1교시 시작 후 08:50) 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50분 이후)과 하교시각(16:05분 이전)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1) 보건실에 있는 경우 : 보건교사의 확인증 지참하는 경우(질병결과)
- 2) 보건실에 있다가 수업 중간(1/3을 경과하지 않은 시간)에 들어오면 보건교사의 확인증이

있는 경우 출석 인정

- 3) 수업 중간에 미인정 이탈한 경우 : 미인정 결과
 - 4) 수업 시간의 2/3를 채우지 못한 경우
-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 가지로만 처리(증빙서류 생략)
- 1) 미인정, 질병, 기타의 사유가 중복된 경우 미인정-질병-기타 순으로 적용
 - 2) 지각, 조퇴, 결과가 해당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적용
 - 3) 위의 1), 2)가 혼재된 경우 1)의 사유를 먼저 적용함
-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 지각·조퇴·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학생·학부모에게 공지하고, 단위학교 전체 교사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X 교과학습발달상황 관리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한다.
 2. '비고'란에는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4.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한다. 입력 대상 범위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 또는 학급 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사가 면밀히 관찰하여 입력한다.
 5.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 교과(군)는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입력한다.
 6.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교양 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을 지닌 과목의 이수 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고 이수 여부는 'P'로 처리한다. 단, 전입생의 경우는 전입교의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고 이수 여부는 'P'로 처리한다.
 7. 체육·예술계 중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 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8.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 자유학기 전출·입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처리는 '자유학기 활동상황'의 「자유학기 전출·입 시 처리 요령」의 내용을 준수함.

9.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내 용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전편입학·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전편입학·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중학교의 학교 외 학습 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하였으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이수내용 기재)

XI 독서활동상황 관리

-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말에 입력한다.
-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XII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관리

-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 내용,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다만, 누가 기록 방법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NEIS에 직접 기재하고 NEIS에서 관리한다.
-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다만,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 ‘1’항의 동아리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의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 ‘1’항에 따른 자율활동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 2012학년도부터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하고, 해당 시간은 담당교사가 ‘동아리활동’란에 활동 내용과 시간을 누가 기록한다.
- 학생이 유예·면제할 경우에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누가기록과 이수시간·특기사항 등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한다.
- 전출 시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의 누가기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NEIS에 입력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누가기록은 일괄기재할 수 있으며, 별도로 결재받지 않는다.

XIII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리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 기록 방법(기재·관리 방법 포함)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NEIS에 직접 기재하고 NEIS에서 관리한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 기록은 별도로 결재받지 않는다.
- 전출 시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의 누가 기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NEIS에 입력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XIV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

-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제10의 1)의 결재 절차(4단 결재)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 인적·학적 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되,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을 제공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4’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 가.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 나. '인적·학적사항'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다. 제18조제4항·제6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XV 졸업사정 및 포상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 29조에 의거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포상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포상 대상 학생 결정) 학생에게 포상을 하려고 할 때는 주관부서에서 포상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 추천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 3조 (포상시기) 포상은 수시, 학기말, 학년말에 행하여 졸업 예정은 졸업식 때 수여한다.

제 4조(포상 방법) 포상은 종류에 따라 상장, 상품, 장학금, 부상 등을 수여한다.

제 5조(포상 종류) 포상의 종류 및 포상 대상 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과 우수상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된 매 학기 (교과목 1위에게)학년별 석차 5% 학생에게 시상한다. 과목별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시상한다.

2. 균태상

가. 3년 개근상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학생

나. 3년 정근상

3년간 결석이 3일 이내인 학생

(단,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를 결석 1일로 통산한다.)

다. 1년 개근상

1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학생

(단, 3년 개근 수상자에게 1년 개근상을 시상하지 않는다.)

3. 특별상

가. 학교장상

품행이 방정하고 전학년의 내신성적 산출기준(사정회 실시일 기준으로 내신성적을 산출)에 의해 1위인 학생

나. 학교운영위원회상

품행이 방정하고 전학년의 내신성적 산출기준(사정회 실시일을 기준으로 내신성적을 산출)에 의해 2위인 학생

다. 동창회장상

품행이 방정하고 전학년의 내신성적 산출기준(사정회 실시일을 기준으로 내신성적을 산출)에 의해 3위인 학생

라. 공로상

당해 학년도 졸업 예정학생 중 학급생활 또는 학교생활 및 학생회 간부로서 건전한 학교 풍토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한 학생 또는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

마. 기능상

당해 학년도 졸업 예정학생 중 3년간에 걸쳐 군 단위의 각종 대회에서 1위(금상, 최우수상 등)의 상을 1회 이상 수상 또는 도 단위 이상의 각종 대회에서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단, 단체상은 담당교사의 추천 시 재가를 얻어 결정한다)

바. 봉사상

희생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봉사활동 실적이 현저한 학생

사. 선행상

예절과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한 학생

아. 효행상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뚜렷한 학생

4. 행사상

교내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등위별 상을 수여한다.

5. 외부상

학교 외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 상의 기여가 있을 때 제 5조에 의거 해당 학생에게 시상하며, 당해 학년도 졸업 예정 학생의 외래상은 학교장상, 학교운영위원회상, 동창회장상을 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외래상의 접수 순에 따라 전학년의 내신성적 산출기준(사정회 실시일을 기준으로 내신성적을 산출)순으로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6. 학년말 졸업장학금

대상이 지정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장학금은 내신성적 산출기준(사정회 실시일을 기준으로 내신성적을 산출)순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사정회) 졸업·진급 및 포상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학년말에 교무회의에서 사정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 7조(포상의 조정)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 종목의 신설, 폐지 또는 포상 대상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조(이중 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 포상하지 않는다.

제 9조(포상 기록 보존) 이 규정에 의한 포상 상황을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시상대장을 기록 비치한다.

부 칙

1. 본 학업성적관리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훈령 제365호 및 관련법에 따른다.

3. 학업성적관리규정은 필요시 수정·보완하여 시행한다.

[별지 1]

시기별 학업성적관리 업무 추진 매뉴얼(1학기)		
월	업무 추진내용 (중점 추진사항)	주관부서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 ○ 교과별 평가계획 수립(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방향과 방법, 평가의 종류, 방법, 시기, 유의사항 등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횟수, 채점기준, 반영비율, 실시 기간, 결시자 인정점 부여기준, 이의신청 기간 운영, 기초 학력 더딤 학생 지도방안 등 • 수행평가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실시 기간) ○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방안 마련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 관련 평가 방법 및 기준 수립 ○ 지필평가가 없이 이수/미이수 처리하는 교양교과도 교과운영에 따른 평가 계획 수립 ○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개정 • 평가단계별 보안 관리 계획 수립 및 명시 •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른 교과목별 성적표기 방식과 성취수준 설정 방법 명시 ○ 학업성적관리규정, 교과별 평가규정, 연간 평가 계획 등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 연간 평가 계획 공지(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발송) ○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전교직원 대상 연수 	<p>평가부서 담당교과</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협의회(1학기 1차고사 및 수행평가 관련) 실시 ○ 1학기 1차고사 실시 계획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 1학기 1차고사 계획 등에 대한 교직원 연수 및 보안관리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교직원의 책무성에 대한 연수 실시 ○ 1학기 1차고사 실시 계획 공지(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 학생 출입제한구역 지정(출제시작~고사완료) 및 통제 ○ 출제계획 수립 및 고사일정,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기준에 대한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성 •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내용과 연계한 문항 출제 • 문항정보표에는 성취기준(내용 또는 코드)을 입력 • 교과협의회를 통한 문항 구조 및 난이도 구성(공동출제) ○ 고사일정,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결재단계) ○ 확정된 고사일정에 대한 인쇄 및 보관(보안 담당자 지정) 	<p>담당교과 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 평가는부서</p> <p>평가부서 담당교과</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협의회(1학기 1차고사 및 수행평가 관련) 실시 ○ 1학기 1차고사 실시 계획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 1학기 1차고사 계획 등에 대한 교직원 연수 및 보안관리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교직원의 책무성에 대한 연수 실시 ○ 1학기 1차고사 실시 계획 공지(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 학생 출입제한구역 지정(출제시작~고사완료) 및 통제 ○ 출제계획 수립 및 고사일정,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기준에 대한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성 •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내용과 연계한 문항 출제 • 문항정보표에는 성취기준(내용 또는 코드)을 입력 • 교과협의회를 통한 문항 구조 및 난이도 구성(공동출제) ○ 고사일정,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결재단계) ○ 확정된 고사일정에 대한 인쇄 및 보관(보안 담당자 지정) 	<p>담당교과 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 평가는부서</p> <p>평가부서 담당교과</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 정기고사 시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실시 ○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별도 확보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조치 	<p>담당교과 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 담당교과</p> <p>평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 정기고사 시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실시 ○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별도 확보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조치 	<p>담당교과 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 담당교과</p> <p>평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 정기고사 시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실시 ○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별도 확보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조치 	<p>담당교과 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 담당교과</p> <p>평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 정기고사 시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실시 ○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별도 확보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조치 	<p>담당교과 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 담당교과</p> <p>평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 정기고사 시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실시 ○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별도 확보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조치 	<p>담당교과 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 담당교과</p> <p>평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 정기고사 시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실시 ○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별도 확보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조치 	<p>담당교과 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 담당교과</p> <p>평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 정기고사 시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실시 ○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별도 확보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조치 	<p>담당교과 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 담당교과</p> <p>평가부서</p>

월	업무 추진내용 (중점 추진사항)	주관부서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점 결과의 확인 및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답·서술형 평가 답안 채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채점 • 문항 오류, 정답 오류, 채점기준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결재를 득한 후 수정 및 채점 진행 • 채점 결과의 공개 및 확인 절차 진행 • 이의신청 기간 운영을 통한 채점 결과 확정 • 최종 확정된 성적일람표에 학생 확인 ○ 1학기 1차고사 결과 분석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별 오답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의 분석 •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담당교과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협의회(1학기 2차고사 및 수행평가 관련) 실시 ○ 1학기 2차고사 실시 계획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 1학기 2차고사 계획 등에 대한 전교원 연수 및 보안관리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교직원의 책무성에 대한 연수 실시 • 1학기 2차고사 실시 계획 공지(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 학생 출입제한구역 지정(출제시작~고사완료) 및 통제 ○ 출제계획 수립 및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기준에 대한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성 •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내용과 연계한 문항 출제 • 문항정보표에는 성취기준(내용 또는 코드)을 입력 • 교과협의회를 통한 문항 구조 및 난이도 구성(공동출제) ○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결재단계) ○ 확정된 고사원안에 대한 인쇄 및 보관(보안 담당자 지정) 	<p>담당교과 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 담당교과</p> <p>평가부서</p>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평가 영역별 채점 결과에 대한 학생본인 확인 •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 및 처리 • 최종 확정된 성적일람표에 학생 확인 • 수행평가 내용에 대한 학생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1학기 2차고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 정기고사 시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실시 •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별도 확보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조치 ○ 채점 결과의 확인 및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답·서술형 평가 답안 채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채점 • 문항 오류, 정답 오류, 채점기준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결재를 득한 후 수정 및 채점 진행 • 채점 결과의 공개 및 확인 절차 진행 • 이의신청 기간 운영을 통한 채점 결과 확정 • 최종 확정된 성적일람표에 학생 확인 ○ 1학기 2차고사 결과 분석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별 오답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의 분석 •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 학기말 성적 산출 및 평가 결과 공개 ○ 학기말 성적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 정기고사 결과에 대한 학생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p>담당교과 평가부서</p> <p>평가부서</p> <p>담당교과</p> <p>담당교과 담당교과</p> <p>담당교과 담당교과 담당교과</p>

[별지 2]

과목별 평가영역 비율(2,3학년)						
국어과						
과 목 명	국어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표현 활동	이해 활동
선택형	서답형(서술)	선택형	서답형(서술)	독서 활동		
영역만점	70점 이하 (2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70점 이하 (2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21% 이하	9% 이상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도덕과 (2학년)						
과 목 명	도 덕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30%)		가치이해	가치실천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서술)	가치탐구		
영역만점	-	-	70점 이하 이상	30점(10점)	30점	20점
반영비율	-	-	21% 이하 9%(3%) 이상	30%	20%	20%
기본점수	-	0점	12점	8점	8점	
(3학년)						
과 목 명	도 덕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60%)		가치이해	가치실천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서술)	가치탐구		
영역만점	-	70점 이하 이상	30점(1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	42% 이하 18%(6%) 이상	20%	20%		
기본점수	-	0점	8점	8점		
외국어(영어)						
과 목 명	영어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듣기	쓰기
선택형	서답형(서술)	선택형	서답형(서술)	말하기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20점) 이상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21% 이하 9% 이상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수학과

과목명	수학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평가방법	60%			40%		
반영비율	1차고사(30%)		2차고사(30%)		배움평가 (서술, 구술, 논술 등)	역량평가 (프로젝트, 주제탐구, 과제연구, 태도 독후활동 등)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서술)	선택형	서답형(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20점) 이상	70점이하 30점(20점) 이상	20점	1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1%이하 9% 이상	9% 이상	21%이하 9% 이상	9% 이상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8점	8점

사회(역사)과

과 목 명	사회, 역사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평가방법	60%			40%		
반영비율	1차고사(30%)		2차고사(30%)		기능	수업과정 평가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서술)	선택형	서답형(서술)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20점) 이상	20점	1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9% 이상	21% 이하 9% 이상	9% 이상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8점	8점

과학과

과목명	과학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평가방법	60%			40%		
반영비율	1차고사(30%)		2차고사(30%)		수업밀착형 평가 (포트폴리오, 학습활동)	융합평가
평가영역	선택형 (서술형)	선택형 (서술형)	선택형 (서술형)	선택형 (서술형)	탐구활동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20점) 이상	70점이하 30점(2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20점) 이상	70점(20점) 이상	10점	2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9% 이상	21% 이하 9% 이상	9% 이상	10%	2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8점	4점	4점

기술·가정과

과목명	기술·가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평가방법	60%			40%		
반영비율	1차고사(30%)		2차고사(30%)		기능1	기능2 및 경청
평가영역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70점 이하 30점 이상	15점	15점	1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9% 이상	21% 이하 9% 이상	9% 이상	15%	15%
기본점수	0점	0점	6점	6점	4점	

음악과

과목명	음악					
	지필평가		수행평가			
평가방법	0%		100%			
반영비율	1차고사(0%)	2차고사(0%)	표현1 (가장 또는 기악)	표현2 (창작)	감상	생활화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30점	30점
영역만점					20점	20점
반영비율					30%	30%
기본점수	0점	0점	12점	12점	8점	8점

미술과

과목명	미술					
	지필평가		수행평가			
평가방법	0%		100%			
반영비율	1차고사(0%)	2차고사(0%)	표현1	표현2	체험	감상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30점	3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30%	30%
기본점수	0점	0점	12점	12점	8점	8점

체육과

과목명	체육					
	지필평가		수행평가			
평가방법	0%		100%			
반영비율	1차고사	2차고사	1학기 2학기	건강/표현/안전 도전/표현/경쟁	보고서	스포츠 피슬십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실기평가	
영역만점				60점	30점	10점
반영비율				60%	30%	10%
기본점수	0점	0점	24점	12점	4점	

한문과

과목명	한문					
	지필평가		수행평가			
평가방법	30%		70%			
반영비율						
평가영역	2차고사		한문화			포트 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그림책 만들기(1학기) 한시짓기(2학기)	아호짓기(1학기) 고전감상문(2학기)		포트폴리오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25점	25점	2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25%	25%	20%	
기본점수	0점	0점	10점	10점	8점	

외국어(생활중국어)

과목명	생활중국어					
	지필평가		수행평가			
평가방법	30%		70%			
반영비율						
평가영역	2차고사(30%)		듣기	말하기	쓰기	문화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 이상	10점	2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1% 이하	9% 이상	10%	20%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8점	8점	8점

[별지 3]

서술형평가 및 수행평가 관리 체제 개선

□ 기본 방향

- 수행평가 반영비율 확대(40% 이상)
- 수행평가 관리 강화로 수행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관련 근거

- 수행평가 관리 등 평가방법 개선(2008 교육과학기술부 주요업무)
-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 연수(교육과학기술부 2010.8.30.)
- 2012 서술형 평가 문항 출제 내용 알림(학교교육과 2012.2.29)
- 2016 중등 학생 평가 계획(학교교육과-3326, 2016.2.25.)
- 201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80호) 개정(2019.1.18.)
- 202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21호) 개정(2020.1.6.)
- 202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65호) 개정(2021.1.4.)

□ 중점 추진 내용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책무성 강화>

- 학교평가 및 컨설팅 시 학교별 수행평가 실태 점검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책무성 강화

<서술형 및 수행평가 전문성 신장>

-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 연수 실시
 - 교육지원청별, 학교별 평가방법 개선 연수
- 서술형 평가 매뉴얼 활용
 - 서술형 평가 교과별 예시자료집 활용
 - 전북형 수행평가 과목별 매뉴얼 및 교과별 예시자료 활용
- 학교별 자체 연수 및 교내 자율장학 실시
 - 학업성적관리규정, 서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계획·내용·기준·시기·과제의 적절성, 사전 예고제, 결과 공개, 이의신청 등

<학교의 수행평가 확대 및 관리 강화>

- 수행평가 반영비율 학기 단위 성적의 40% 이상
 - 과제 제출(수업시간 외)형 방식의 수행평가를 금지한다.
 - 학생 중심 수업에 맞는 과정중심 수업 밀착형 평가 실시
- 교과협의회 중심의 수행 평가 관리체계 구축
 - 채점방안 및 채점기준안 협의, 공동출제, 공동채점 등 신뢰도 제고 노력
- 학생, 학부모의 평가 과정·방법 등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 예방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운영 강화
 - 평가요소 및 채점 기준을 자세하고도 충분하게 공지하여 객관성, 신뢰성 확보
 - 조별 평가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점수 부여 방안 마련(구성원 활동에 따른 차등 평가)
 - 수행평가계획은 사전 공지 및 결과 즉시 공개, 학생의 이의신청 기회 부여
-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모니터링 실시
 - 시기 : 학기말 또는 학년말, 최소 연1회 이상 실시

- 방법 : 평가기준, 반영비율, 수행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등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인식 조사
- 결과활용 : 차기 수행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

※ 교과협의회에서 계획 수립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사전 예고 → 수행평가 실시
→ 결과 본인에게 공개 → 이의신청 기회 부여 → 모니터링 실시 → 차기 수행평가 계획에 반영

수행평가 계획 수립·운영 시 고려사항

◦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밀착형 평가

- 학교와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 재구성
- 학생 참여형 수업 전개(흥미, 자기 효능감, 참여, 협력, 배려, 경청, 책임, 실천, 동기, 가치 등의 평가 요소 반영)

◦ 지식보다는 역량, 수행 결과만이 아닌 수행 과정을 평가

- 의사소통능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쓰기, 말하기 등의 평가 요소 반영 권장

◦ 과제 제출(수업시간 외)형 방식의 수행평가 금지

- 정규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
- 학년 협의회 및 교과 협의회를 통해 과제의 적절성 사전 협의
-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부모, 학원 등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제 부여 금지
- 수행평가 도중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방과 후 시간 등 특정한 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교과지도 교사가 반드시 입장 지도해야 함.

※ 가정·경제적 주변 요인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학생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료 제공

◦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제교사 형태의 지필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한 서술형·논술형 평가 권장
- 교과협의회를 통한 서술형 평가 계획 수립 및 채점 기준안 설정

◦ 교과 및 학년 협의회를 통한 수행평가 시기 적정화

◦ 예·체능 교과의 영역별 균형 있는 수행평가 시행

- 실기(기능), 감상, 미적체험, 이론, 이해, 지식 등에 대한 반영비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여 실기 평가에 대한 부담 경감
- 과제형 작품 평가를 금지하고, 수업시간 내에 제작된 작품 및 제작과정 중심 평가

◦ 태도 평가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교과내의 정의적 영역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간접평가

◦ 모둠(조)별 평가(또는 그룹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노력 정도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별지 4]

학업성적 평가 및 보안관리 단계별 업무 매뉴얼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평가 기반구축 (학기 초)	학업성적관리규정 정비 및 연수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의 정확성·공정성 확보	관리자, 평가담당
	연간평가계획 수립 (수행평가 포함)	고사일시, 과목, 횟수, 반영비율, 평가영역, 평가방법, 채점기준 등 포함 (반드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계획 수립)	전교사
	보안관리 계획수립	평가 단계별 보안 및 인쇄관리 담당자: 교감 평가관리실: 교무실 인쇄실: 행정실 인쇄담당자: 시설관리자(행정실)	평가담당교감, 평가부부장 행정실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재	연간평가계획 등 심의 및 학교장 결재	평가담당
	연간평가계획 홍보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절차 포함)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 사전 안내(학생, 학부모)	평가담당
	평가연수 실시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체연수 강화	전교사
출제 (고사 전)	성적처리 선행작업	NEIS 입력사항 선행처리	교과담당
	학생 대상 안내	고사 시간표, 과목별 시험 범위,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절차, 인정점 규정, 지각생 및 결시자 처리규정, 이의신청 기간 운영 등 고사에 따른 각종 유의사항. 특히 수행평가는 방법, 일시, 장소, 배점, 결시자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사전에 반드시 공지	담임 교과담당
	정기고사 진행 전과정에 대한 유의사항, 단계별 보안관리, 학생평가에 대한 교원의 책무성, 부정행위예방 관련 등 연수	평가담당	
	출제관련 교과협의회 실시 - 평가범위, 출제유형, 문항 수(공동출제시 반드시 출제문항 공동검토)	교과담당	
	공동 출제·검토(교사 1인 출제 경우 - 교과부장 검토)	교과담당	
	지난 년도(학기) 문항 출제제, 출판사 제공 교사용 교재(CD) 및 참고서 전재 여부 등 부적정 출제 사례 확인	교과담당 결재권자	
	배점표시, 동점자 양호 방지, 평가문항 수 증대, 배점 다양화, 역배점 지양 등 평가관리 공정성 확보	교과담당	
	출제원안 서식 통일(학교, 출제지, 쪽수, 문항수, 배점 등)	평가담당	
	출제원안 파일은 암호 넣어 보관(이동식 저장매체 이용). 평가 관련 자료 네트워크 이용 전송 금지, 확인용 원안 및 파일 분쇄 ※출제 관련 문제지, 자료 등 교외 반출 금지	교과담당	
	서답·서술형 채점 기준 작성(부분점수, 유사정답 포함) 파일 암호 넣어 보관	교과담당	
출제 (고사 전)	학생출입 통제구역 지정 및 홍보	인쇄실, 교무실, 평가관리실 등(분실 및 도난 유의) (원안출제 시작부터 고사종료까지)	평가담당
	평가문항 출제 및 고사원안 제출	NEIS를 통한 문항정보표 작성(성취기준, 동점자 최소화 고려 배점 부여, 성취내용 기재 등 표시), 계열 및 과목코드, 총점 확인 결재 선에 따른 검토 및 결재(부모 및 친인척 배제) 원안 보관 및 보안 관리 철저	교감, 교과담당 평가담당 평가부장
인쇄 및 보관	인쇄 및 보관 (보안 관리)	인쇄 담당자 보안 교육, 원안 수령 당일 인쇄 원칙(인쇄한 문제지, 원안, 파일 보관 철저) ※당일 인쇄가 어려울 경우 평가 원안 평가담당에게 인계	교감, 행정실장 평가부장

(고사 전)		인쇄 상태 확인 및 수정, 문제지 매수 확인, 답안지 준비	인쇄 담당자 교과담당 평가담당	
		인쇄실 출입입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		
		인쇄실 및 평가관리실 보안관리 철저(담당자 지정, 이중잠금장치, 보안경비시스템 운영 등), 문제지 보관장 이중잠금장치 설치		
시행 (고사 중)	고사 관리 유의사항	고사 관리 유의사항 연수(교사, 학생 대상 실시)	평가담당	
		학급별 응시 현황 및 고사 시간표 게시(칠판)	학급담임	
		OMR 답안지 작성 및 교체 시 유의사항 지도	답임/감독	
		휴대폰, MP3 등 전자기기 미제출 금지 안내 및 지도	답임/감독	
		부정행위 사전 예방 철저	답임/감독	
		실제 고사 시간 확보(준비형 시행, 문답지 배부시간 5분 확보)	답임/감독	
		지각생 처리 기준 준수	감독	
		결시생 답안 카드 작성		
		부정행위자 발생 시 처리 규정 준수		
		답안지 교체 가능 시점 기준 준수		
		회수 답안지 매수 확인		
		답안 봉투 및 답안지 감독관 확인란 동일한 날인 또는 서명		
		답안지 봉투의 기재 사항 확인		
		교환·폐기·여분 답지 등 회수		
고사감독 배정		평가 당일 발표(해당시간 출제교사는 시험시간 중 대기)	평가담당	
		답임을 맡은 학급 및 교사의 자녀·친인척 등이 속한 학급 시험 감독 배치 금지	평가담당	
		감독교사 임의 교체 금지(고사 전 또는 후에 결재)	감독	
		2인 감독, 학부모 보조감독, 복도 감독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고사감독 배정	평가담당	
평 가 후		고사정답 공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간, 방법 등 결정	평가담당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 확인	교과담당	
		문항별 배점, 채점기준 등에 따라 채점		
		결시생·전입생·특기생 등 인정점 부여	교과/담당	
		답안지 봉투 서명 확인(감독, 채점, 1검, 2검)	교과담당	
		정답 없음, 정답 수정, 유사답안 추가, 부분점수 추가 등의 경우 발생시 절차 준수(교과협의회→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수정 사항 공지)	교과담당 평가담당	
		이의신청 기회 부여(절차에 따라 처리)	교과담당	
		성적 최종 확인	교과담당	
		NEIS 성적 마감	교과담당	
		성적처리	평가담당	
		성적표 출력·발송	학급담당	
		답안지 및 성적확인자료 보관	평가담당	
		교과별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교과담당	
		시험문항 공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개 기간, 방법등에 따라 시행	평가담당

[별지 5]

고사감독 배정 및 감독수행 단계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리스트
감독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도감독관 운영 적극 권장 ✓해당교시 과목담당교사는 고사 감독에서 배제하고 고사시간 중 대기 ✓담당교사의 담당학급 감독배치 및 학부모 감독의 해당자녀 고사실 배치 금지 ✓학급별 감독교사를 사전에 알지 못하도록 당일 개시 원칙 준수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감독교사는 학교 실정에 따라 적의 배정하되, 학생이 사전에 감독 교사를 예측할 수 없도록 조치 ✓감독교사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며 고사 전 또는 후에 학교장 결재 후 교체하도록 하여 공정성 확보(감독교사 임의 교체하여 사안 발생 시 혼란 야기) ✓복수감독교사제, 시차제 등교로 학년 구분 실시, 학부모 보조감독제, 복도감독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시험 감독 강화 방안 모색 ✓답안지 교체가능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감독교사가 임의로 답안지 교체 여부를 판단 처리함에 따른 형평성 시비 예방 ✓고사 시간 내에 OMR 답안지에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표기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처리 지침이 불명확하여 감독교사별 임의 처리에 대한 형평성 시비 예방 등
감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학급의 문답지를 가져가는 사례, 미리 문답지를 가져가 책상에 방치하는 사례, 화장실에 들렸다 분실하는 사례 등 실수 미연 방지 ✓부정행위 예방조치(핸드폰 수거, 자리바꿔 앉히기, 종료 후의 정숙 유지 등)를 충분히 실시 ✓감독 소홀로 인한 부정행위 유발에 대한 시비 사전 예방 ✓감독교사의 지나친 감독 행위로 인한 학생 시험방해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감독 교사의 불필요한 언행 금지) 등 ✓감독교사 입실 시간 차이에 따른 실제 고사 시간 미확보에 대한 시비 사전 예방(예비령 활용) ✓감독교사의 고사 시간 혼동으로 일찍 종료하여 생기는 시비 예방 철저(칠판에 반드시 정확한 고사 시간 기재 등) ✓학생이 고사 종료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답안지에 이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수립 ✓정해진 고사 시간을 확보하여 감독하고 감독교사가 임의 조정하여 공정성 시비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 ✓감독관 서명시 약자를 사용하지 말고 날인하거나 정자로 서명하여 위조 예방 ✓OMR 답안지나 서답형 답지에 감독교사 서명(1인 감독의 경우 예방책 수립) ✓답안지 매수와 응시자수 일치 여부 철저 확인(반드시 답안지 순서와 매수 등을 확인한 후 고사 본부에 제출하도록 사전 연수) ✓교환·회수·폐기 답안지 및 여분의 문제지 모두 회수 등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 예방 조치	
구분	내 용
부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두 학년이 공조한 부정행위 ✓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흘려놓은 다음 답을 알려줌 ✓ 감독교사에게 시간을 물어 보면서 책상 밑에서 손짓으로 알려줌 ✓ 시험지와 동일한 지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임 ✓ 시험지가 2장 이상인 경우 똑같은 크기의 프린트물을 시험지에 포개어 놓음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 ✓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둠 ✓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 ✓ 팔짱을 끼고 한손으로는 문제번호, 다른 한손으로는 답안을 가르쳐 줌 ✓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주로 기침)와 함께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 줌 ✓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 다른 학생이 주워(기름종이 등) ✓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 줌 ✓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 ✓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혼란한 틈을 타서 서답형 문항의 답안을 베끼거나 답안지를 걷는 학생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음(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연수 실시 ✓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불시에 좌석 이동 조치 가능(사전 협박에 의한 부정 행위 방지에 도움) ✓ 감독 중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행동을 펼히 주시 ✓ 문제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 ✓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는 다른 학생이 답안을 볼 수 없도록 유의하고, 필기 도구는 진하지 않은 것 사용 ✓ 종료령이 울리면 모두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답안지를 회수 ✓ OMR 답안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분의 OMR 답안지는 반드시 회수하며, 평가계에서 철저히 관리 ✓ 감독교사가 1명인 경우 답안지 서명 보완책 강구(서명 중 부정행위 발생) ✓ 질문을 일체 금하고 필요한 경우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교사의 조치를 기다리게 하며 학생들의 소리 동작 등에 유의 등
부정 행위 예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 ✓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 소지금지 등 부정행위 예방,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조치 및 선도위원회 회부 ✓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등
부정 행위 처리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	
구분	절차별 업무처리
학업성적 관리규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점 부여 관련 규정 확인 ◦ 인정 사유 및 인정점 비율 규정 제정 확인 ◦ 제출시기 및 필요 증빙자료 확인 : 결석계, 담임의견서, 공문, 의사의 진단서(의견서), 진술서, 사망 확인서 등의 서류
서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실시 상황표 또는 결석계 작성 및 제출 ◦ 인정점 부여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서류 제출 기한 확인
인정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증빙서류 검토 확인 - 인정점 부여(공결, 경조사, 생리결, 질병결, 기타결, 미인정결, 부정행위 등) ◦ 인정점 대상자 관련 제출 자료 학교장 결재 ◦ NEIS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입력 ◦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결시생인정점부여기준관리]-[일반결시]-[기준점수(과목)]-[평균 점수 비율(전입생제외)]로 설정
학기말 성적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산출 대상(고사/영역) 관리(* 반드시 '기준고사/영역' 설정 시 1차고사↔2차고사 교차설정) ◦ 성적산출 학생 관리 ◦ NEIS 인정점 산출 대상자 : 인정점 부여 ◦ 학기말 성적 산출 (과목별) ◦ 인정점 산출 대상자 자료와 증빙자료 합침 보관 (감사시 확인 자료임)
<input type="checkbox"/> 인정비율 및 인정점 관리	
1. 인정비율 및 인정점 처리 방법	
<p>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 감염병, 병원입원 등으로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시에 따른 기준점수 산출방법[2. 나. 다. 라. 항] 및 인정비율[4.]을 결정한다. 그 결과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하며, 평가 인정점의 처리는 인정점 산출 방법[3.]에 따른다.</p>	
2. 기준점수 산출 방법	
<p>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아래 '다'항과 '라'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p> <p>다.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p> <p>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동일시수)의 성적</p> <p>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p> <p>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라'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p> <p>*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서 결정함</p> <p>라. '다'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준점수를 선택할 수 있다.</p> <p>1)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p>	

라 인정점수를 부여

- 2) 전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 3) 동일 교과의 평균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 4) 동일 학기의 전과목 평균 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 5) 선택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 과목으로 인정하여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3.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을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최종 인정점 = 기준점수 ×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인정점 부여비율}$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수학	68.0	65	62.3
			47.64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 1) $68.0 : 65 = 62.3$: 인정기준점수
- 2) 인정기준점수 = $(65 \times 62.3) / 68 = 59.55$
-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 4) 최종 인정점 = 47.64

4. 인정비율 부여 방법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 단위로 적용)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 5) 「학교폭력 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중의 결석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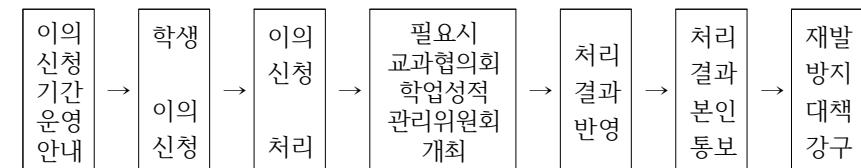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하루 단위로 적용)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 2)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3)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다. 미인정결석 :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
- 라.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 1)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 2) 부정행위 협조자

[별지 8]

이의신청 기간 운영

1. 운영 목적: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의 공정성·정확성·신뢰성·객관성 확보 및 공정한 성적처리
2. 이의신청 기간: 성적 결과 확인 후 3일간이며 이는 사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지한다.
3. 이의신청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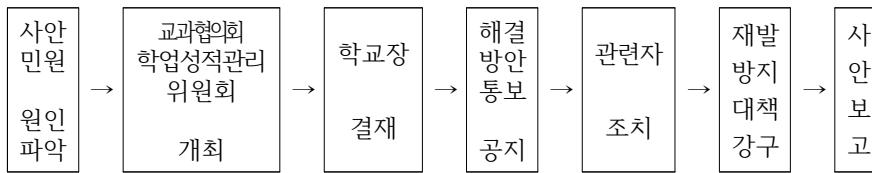


4. 유의사항

- 가. 교과별 평가규정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이의신청 기간 운영에 대한 내용 반드시 포함
- 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교과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 대책 논의
- 다. 교과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처리 방법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학교장 결재 후 결과 처리
- 라. 이의신청 처리 전·후 변경된 평가관련 서류는 결재 절차를 거쳐 보완
- 마. 평가의 공정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평가 관련 사안(민원) 발생 시 처리

1. 사안(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



2. 절차준수 목적

- 가. 사안(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정상적인 학사운영 지원
- 나. 학교 학업성적관리 방안체계 재정비 및 평가의 공정성·정확성·신뢰성 제고
- 다. 사안(민원)의 재발 방지를 통한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3. 사안(민원)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 가. 사안(민원)의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
- 나. 사안(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즉시 소집
 - 관련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공정성·정확성·투명성·신뢰성에 바탕한 해결방안 모색
 - 추가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방안 도출
- 다. 도출된 해결방안에 대한 학교장 결재
- 라. 민원인에게 해결방안 안내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유선,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안내
- 마. 관련자 조치
 - 사안에 따라 경위서 징구 및 주의·경고·징계 등 조치
 - 사립학교의 경우 관련자를 재단에서 징계
- 바.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사안(민원)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 사안보고: 사안보고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하여 지역교육지원청 및 전라북도교육청 평가담당 장학사에게 보고

일부 문항 출제오류로 인하여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

1.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

- 가. 정답이 없거나 모두 정답인 경우
- 나. 내·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문항에 대한 타당도·신뢰도가 떨어진 경우

2. 재시험 절차

- 가. 출제오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교과협의회 개최
- 나. 관계자에 대한 사유서 징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대책 수립 및 학교장 결재
- 라. 출제오류 및 재시험 일정 등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안내
- 마. 재시험 실시, 채점, 검토, 성적처리
- 바. 재발방지를 위한 전교원 대상 연수 실시 및 사안보고

3. 관련서류 보완

- 가. 재시험 문항에 대한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추가 작성·제출
- 나. 재시험 일정 마련
- 다. 재시험에 따른 성적처리 방법

* 학기말 반영비율이 30%인 1차고사 선다형 10번 문항 5점 배점인 경우의 출제오류에 대한 처리과정

- 1) 다음 작업을 먼저 수행한 후 처리
 - 가) NEIS [지필평가]-[마감관리]에서 해당과목의 마감을 해제
 - 나) [지필평가]-[문항정보표]에서 해당과목을 [조회]한 후 [조회]버튼 아래에 있는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내는 대화상자에서 [정답/배점]을 선택하여 삭제
 - 다) [지필/수행 선행작업]-[지필평가고사관리]에서 해당고사 해당과목의 만점과 반영비율을 아래 계산방법과 같이 조정하여 입력
 - [지필평가]-[문항정보표]에서 [1차고사] 해당 과목을 선택한 후 100점 만점으로 입력되었던 것을 해당 문항의 배점만큼 감소시켜 만점을 조정하고 출제오류에 해당하는 문항의 배점을 0점으로 수정하여 채점
 - 선다형 10번 문항이 오류이고 배점이 5점이므로 기준에 선다형 만점이 50점이었다면 오류 문항에 해당되는 5점을 뺀 45점을으로 수정하고 과목만점을 95점으로 수정하여 저장
 - [지필/수행 선행작업]-[지필평가고사관리]에서 고사를 추가(예, 1차추가고사 등)하고 [지필/수행 선행작업]-[지필평가과목관리]에서 해당과목을 추가한다. 이 때 학기말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입력

○ 기준의 만점 : 변경되는 만점 = 기준의 반영비율 : 변경되는 반영비율

○ $x(\text{변경되는 반영비율}) = (\text{변경되는 만점} \times \text{기준의 반영비율}) / 100$

- 1차고사 반영비율계산

$$100:95 = 30:x \quad x = (95 \times 30) / 100 \quad x = 28.5$$

- 1차 추가고사 반영비율계산

$$100:5 = 30:x \quad x = (5 \times 30) / 100 \quad x = 1.5$$

* 소수 3자리 이상 발생될 경우와 결시자 인정점 부여를 위한 기준고사 영역 설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 [지필평가]-[문항정보표]에서 [1차추가고사] 해당과목을 선택한 후 선다형 만점 및 과목만점을 5점으로 입력하여, 1번 문항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출제한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결재를 득한 후 재시험을 치름. 단계별로 정기고사와 같은 방법으로 시스템에 채점

- 학기말 처리를 위해 [성적산출선행작업]-[성적산출대상고사/영역관리]에서 결시생 인정점 처리를 위한 기준고사 영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력한 후 학기말 처리

[별지 11]

학생평가 관련 사안(민원 포함) 보고

○○학교장

보고일		보고자	
사안 개요			
학년	<input type="radio"/> 학년	고사명	<input type="radio"/> 학기 <input type="radio"/> 차고사
과목명		재시험 여부	<input type="radio"/> ○, <input checked="" type="radio"/> ×
재시험 사유	시험범위오류, 문항오류, 고사관리오류, 문항유출, 문항전재, 기타		
재시험 날짜		재시험 문항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내용(사안 발생 경과, 원인 및 사안 인지 경과 등) • 조치 내용(회의 개최 일시 및 결정 내용 등) • 조치 결과(민원 해결 처리에 따른 결과 등) • 붙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협의회 회의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경위서, 가정통신문 등) 			

*** 학교장 결재 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에 제출***** 위는 재시험 사안 중심 예시임. 사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양식 변경 활용해야 함**

[별지 12]

2022. 학생평가 시행 보안 관리 점검표

학교명		점검일자	2021. . . ()		
작성자	(서명)	평가담당 부부장교사	(서명)	확인자 (교감)	(서명)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O, X)	비고
출제	1. 평가 시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2. 교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관련 교직원을 평가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였는가?				
	3. 평가 시행 전 도덕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는가?				
	4. 평가관련 자료(일안, 문항정보표, 서술형 채점기준표 등)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 보관하였는가?				
	5. 평가관련 자료(인쇄물, 참고자료 등)를 시건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6. 평가관련 자료의 네트워크 전송 금지일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7. 평가 일안 결재본을 이중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				
	8. 평가관리실의 책임자가 교강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 교감이 아닌 경우 [비고]란에 담당자 작성				
	9. 출제기간 동안 출제장소(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인쇄	10.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평가담당자 및 인쇄담당자 외 인쇄실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11.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인쇄실 출입시 휴대전화 등(촬영가능 기기)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가?				
	12. 인쇄실에서는 평가지 수령 즉시 인쇄하고, 인쇄가 마감된 원안지를 즉시 담당자에게 인계하였는가? (수령 당일 인쇄 원칙)				
	13. 평가업무 담당교사의 입회에 관련자료들을 밀봉하고 확인하였는가?				
	14. 평가지를 평가관리실의 이중잠금 보관장 또는 이중철제문에 보관하고 있는가?				
	15. 평가관리실에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CCTV 등) 및 보안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가? (비고란에 관련내용 작성)				
	16. 인쇄 작업 후 인쇄 원지 및 짜지를 포함한 제반 시험관련 자료를 평가자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시행	17. 해당 과목 평가지를 고사 당일 평가관리실에서 반출하였는가?				
	18. 감독교사는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19. 감독교사는 폐기 답안지를 모두 회수하였는가?				
	20. 고사본부에서는 감독 교사에게 답안지 인수 즉시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21. 시행 기간 동안 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채점	22. 채점 교사는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23. 채점기간 중 학생 답안지를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24. 채점기간 동안 채점장소(성적처리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25. 학생의 확인이 마감된 답안지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				
기타	26. 선행교육 균질 관련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는가? (비고에 횟수입력)				
	27. 선행교육 균질 관련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는가? (비고에 횟수 입력)				

기타 의견

[별지 13]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종 류	소년보호기관	위탁학생 (대안학교 등)	건강장애학생 및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 원격수업
학적사항	• 재학생에 대하여 관리함.	•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함.	•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함.
출결상황	• 소년보호기관의 출결 그대로 인정함. • 평가기간 등 지정된 등교일은 재적교에서 출결처리 함.	• 위탁교(기관)의 출결 그대로 인정함. • 평가기간 등 지정된 등교일은 재적교에서 출결처리 함. • 평가기간 등 소속학교의 등교일은 재적교에서 출결처리 함. • 해당일의 수업일수와 출결내용은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과 소속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출결처리	
성적 (지필평가/ 수행평가)	<성적산출 소년보호기관> • 소년보호기관의 성적을 인정함(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 재·전·편입생의 성적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함. • 소년보호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되,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함. <성적미산출 소년보호기관> • 소년보호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미응시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성적산출 위탁교(기관)> •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함(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되,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성적미산출 위탁교(기관)> •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미응시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 • 재적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 결석으로 처리함.
각종 비교과 영역	• 소년보호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 위탁교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교육정보 시스템	•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각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으로 정하여 인정점을 부여함.

*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아동복지 시설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고, 재적교(지필·수행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보호처분 7호 학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분류처우) 제3항에 따라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수용)은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별지 14]

정기고사 계획 및 진행 매뉴얼

2022학년도 1학기 1차고사 계획

용진중학교

I 2022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성적처리 일정 및 고사당일 시정

구 분	기 간	담 당 자	비 고
정기고사 관련 사전연수	04.06(수)	평가담당	전교직원 대상
시험일정 공고	04.08(금)	평가담당, 담임교사	학교홈페이지 각 학급게시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제출	04.15(금)	평가담당	원안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고사원안 검토 및 정정	04.18(월) ~ 04.20(수)	평가담당	
결재, 시험지 인쇄, 보관	04.20(수) ~ 04.21(목)	평가담당	
학년/학급별 시험지/답안지 포장	04.22(금)	교과담당	학급별 시험지 1장 이상 여분 포함
1차고사 실시	04.25(월) ~ 04.27(수)	감독교사	부정행위 없도록
답안지 채점 및 점검	04.28(목) ~ 05.02(월)	교과담당	
OMR 카드 리딩	05.03(화) ~ 05.09(월)	성적처리담당	
성적확인 및 정정	05.10(화) ~ 05.12(목)	교과담당	리딩완료 후 NES에서 교과담당 교사가 채점
성적 이의신청기간(3일간)	05.12(목) ~ 05.16(월)	교과담당	학생들에게 사전공지
성적단표 및 OMR 카드 제출	05.16(월)	평가담당	
성적표 발송	05.17(화)	학급담임	

구 分	시 작	끝	비 고
조 회	사전교육	08:40	08:50
1 교시	문답지 배부	08:55	09:00
	평가 진행	09:00	09:45
2 교시	문답지 배부	09:55	10:00
	평가 진행	10:00	10:45
3 교시	문답지 배부	10:55	11:00
	평가 진행	11:00	11:45

* 2학년 부감독은 1반과 2반 사이 복도감독 교사 1명임.

II | 2022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일자별 시간표

일자	4월 25일(월)		4월 26일(화)		4월 27일(수)	
교시/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1교시	국어	국어	영어	영어	수학	수학
2교시	자율	역사	자율	자율	자율	자율
3교시	과학	과학	사회	사회	기술.가정	기술.가정

III | 정기고사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시 유의사항

1. 시험문제 출제 시 유의 사항

- 가. 2022 교과별 평가계획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출제하고 평가
 나.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서술형)은 정해진 제출기한 내에 A4로 제출
 다. 과목별 영역 평가 준수 : 각 교과별 평가 기준안 참조
 라. 전년도 문제 또는 참고서 문제 출제 금지 (교무실 비치된 전년도 문제 참고)
 마. 정답이 없거나 이중 답의 문제 출제 금지
 바. 서답형, 선다형 문제의 배점표시, 동점자 양산 방지, 배점 다양화, 역배점 지양
 사. 문항정보표에 서답형 채점 기준 명시하며 부분점수를 다양화
 아. 고사 관련 자료(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에 반드시 비밀번호 설정, 네트워크 공유금지, 메신저 전달 금지, 반드시 개인용 이동저장매체를 사용. 출제관련 문제지, 자료 등 교외 반출 금지
 자. 출제 완료 후, 수업 교실이나 기타 장소에서 특정 학생에게 출제 문제를 암시하거나 정리 명목으로 출제 문제 암시하는 의혹 시비 철저 차단
 차. 서술형(2, 3학년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20% 이상 출제)
 카. 출제 문항 중 부정적인 발문에 대해서는 진한 글씨체로 작성하고 밑줄 긋기
 타. 교과담당교사는 평가담당 교사로부터 인쇄된 문제지를 배부받아 학급별로 포장하여 여분 시험지와 함께 평가담당교사에게 제출.
 파. 시험 종료 후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배점 또는 정답, 유사답 등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제자가 정정원을 작성하여 평가계에 제출(정정원 작성 시, 기존 출제와 수정 된 사항을 반드시 기재)

2. 시험답안 채점 및 결과 처리 시 유의 사항

- 가. 문항정보표 정답/배점 입력
 1) 채점을 위한 정답과 배점은 교무업무시스템의 다음 경로에 교과담당교사가 직접 입력
 2) [성적]-[지필평가]-[문항정보표]에서 '고사', '학년', '과목' 선택 → 조회 → 선택형-서답형 템 → 문항별 '배점'과 '답안'을 입력하고 저장
 나. 채점
 1) 평가 후 성적처리 담당교사가 카드리딩-결과 파일 업로드하면 교과담당교사가 NEIS 상에서 채점
 2) [성적]-[지필평가]-[채점]에서 '고사', '학년', '과목' 선택 후 조회→특정 반 선택 후 검증하여 이상이 없으면 → '학생답안선택형'을 선택 → 채점
 다. 교과담당교사가 학생들의 점수와 결시명칭, 학적변동 등을 확인하고, 학생답안이 없는 결시생과 학적변동 학생은 '결시명칭' 또는 '고사별 학적변동' 란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저장

- 라. 학생들의 고사성적 확인을 위해 개인별성적일람표를 출력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함.
 [성적]-[성적조회]-[개인별성적일람표조회]에서 '고사', '학년', '반' → 조회 → 일괄출력하여 학생 개인에게 배부하여 확인
 마. 학생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신청 접수
 2) 교과담당교사는 [성적]-[지필평가]-[학생답관리]에서 '고사', '학년', '과목', '반' 선택 후 조회 → 학생 본인의 OMR 카드를 확인
 3) 학생 답안을 수정해야 할 경우 OMR카드를 다시 읽어 [성적]-[지필/수행선행작업]-[성적파일 올리기] 한 후 해당 학급에 대하여 [성적]-[지필평가]-[채점]에서 재 채점을 실시함. [성적]-[지필평가]-[학생답관리]에서 선다형 답은 수정할 수 없음(잠금/해제 후 서답형점수는 수정 가능)
 바. 성적일람표 출력 및 학생 확인
 1)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신청 해결 또는 기간 종료 후 실시
 2) 성적 결과는 교과담당교사가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확인 후 담임교사가 완료된 성적일람표(학생별학생답정오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평가담당 교사에게 제출
 사. 서답형 답안 채점시 유의사항
 1) 채점은 학교 내에서 하며 학교 외부로 답안지 반출 금지
 2) 정답은 O, 오답은 X로 답안 내용 위에 적색 펜을 이용하여 표기
 3) 정정 사항은 도 줄을 그어 정정한 후 날인
 4) 카드 봉투에 초점, 재점 교사는 서명 및 날인
 5) 서답형, 서술형 답안 채점 시 각 문항마다 부분 점수를 반드시 기록
 6) 서답형, 서술형 점수를 OMR카드에 이기 시 번호, 이름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마킹
 7) 채점 도중 발생한 추가 유사정답, 부분점수는 반드시 교과협의회를 거쳐 추가 결재
 8) 성적 이의신청 기간을 홍보하고, 성적의 정정은 정정원에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결재
 아. 성적 마감
 1) 교과담당교사가 해당고사 성적처리 절차를 마감함
 2) [성적]-[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고사', '학년', '과목', '반'을 선택 → 조회→마감함

IV | 학급 담임교사의 학급지도 유의사항

1. 출제 및 고사 기간 중 교무실에 학생 출입 금지 지도
 2. 학급별 책상 배열 : 5×5(3학년) 또는 4×5(2학년)로 배치
 ※ 책상은 책상 서랍이 교실 정면을 향하도록 둘려놓음
 3. 고사 당일 칠판에 재적 및 응시 상황을 정확히 기재
 [예 : 재적 00명, 응시 00명, 결시 0명(1101 홍길동(질병))]
 ※ 출결사항에 '사고결'은 없으며, '미인정결'로 표시
 4. 고사 당일 책상 속을 비우고 가방은 지퍼를 채워서 교실 앞쪽에 가지런히 정리 정돈 지도
 5. 고사기간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사전지도, 책상 위 낙서 금지 등 부정행위 처리사항 지도. 부정행위 적발 시 선도처분 및 0점 처리
 6. 훈화를 통하여 올바른 수행태도 및 OMR 카드 작성 요령 지도
 답안용 카드에 학번, 성명, 과목명, 과목코드 등을 정확히 기록 할 것
 7. 답안용 카드의 모든 마킹은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하며, 답안용 카드의 모든 글씨는 검정색 또는 청색펜으로 작성함. 서술형 및 서답형 답안의 수정 시 두 줄 긋기

(연필 또는 샤프펜, 적색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절대 금지)

* OMR 답안지, 서술형 답안지 모두 연필 또는 샤프펜 절대 사용 금지

V | 시험 감독교사 유의사항

1. 시험 감독 배정

가. 자녀 및 친·인척 관계, 담임교사는 해당 학급의 감독을 금지하고, 발표된 감독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감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

2. 시험 시작 전(* 책상은 책상 서랍이 교실 정면을 향하도록 둘려놓음)

가. 소지품 정돈 및 휴대폰 등 통신기기 수합(담임교사 또는 감독 교사)

나.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은 무릎 위에 놓고 대기

다. 정감독 교사는 답안지 봉투에 수검학생 현황을 기록하고, 부감독 교사와 함께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2학년은 정감독만 있음)

라. 답안용 카드의 모든 마킹은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으로 하며, 답안용 카드의 서답형·서술형 답안의 모든 글씨는 청색펜 또는 검정색펜으로 작성함(연필 또는 샤프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절대 금지) 지도

3. 시험 진행 중

가. OMR 카드는 학생 수에 맞게 배부하고, 여분은 시험 종료 후 평가계에 제출

나. 문제지 배부 후 학생들에게 시험지 인쇄 상태와 전체 쪽수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상이 있는 시험지와 답안지는 즉시 교체

다. 3학년 정감독 교사는 교실 정면 중앙에 위치하고 부감독 교사는 교실 뒤쪽에 위치하여 정속한 시험장 분위기 조성

라. 2학년 정감독 교사는 교실 정면 중앙에 위치하고 2학년 1반과 2반 복도에는 복도감독 교사가 위치하여 원활한 고사 진행

마. 시험 중 중간 퇴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중간에 퇴실하게 될 경우 답안지를 제출한 뒤에 허용하거나 부감독 교사 또는 복도감독 교사와 동행

바. 정감독 교사는 답안지에 학년, 반, 번호, 이름, 과목 코드를 바르게 기재하고 표기했는지 확인하고 감독 확인란에 날인 또는 자필로 확인

사. 답안지 교체 허용 시간 안내 (예 : 시험 종료 5분 전까지만 답안지 교체를 허용함)

아. OMR카드 회수용 봉투 및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자필로 성명 기재

자. 결시자 확인

4. 시험 종료 후

가.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OMR카드 답안지는 책상 위 오른쪽, 기타 답안지는 왼쪽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게 한 후 맨 뒤에 앉은 학생으로 하여금 최대한 신속하게 답안지를 회수하도록 함

나. OMR카드 등 모든 답안지는 번호 순서대로 수합하고 매수를 반드시 확인함

다. OMR카드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카드 교체 시 뒷면의 이기 여부도 확인(OMR카드 답란에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 사용 불가)

라. OMR카드의 답란에 적색 플러스펜으로 표시했던 경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하지 않음 경우는 모두 오답 처리(담임과 감독교사는 수시로 확인)

마. 고사 중 교환하여 폐기할 OMR카드는 그 자리에서 찢어 폐기처리

바. 수거한 답안지 매수와 확인 날인 여부를 확인한 후 봉투에 담아 즉시 평가계에 제출

5. 부정행위자 처리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학생 진술서, 증거물, 감독교사 확인서 등을 갖추어 인성인권안전부장 및 평가계에 제출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선도규정에 따라 처리

-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을 소지하고 고사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6. 지필평가 시행 중 비상상황(코로나-19 관련) 발생 시 대처 방안

가. 고사 전 또는 도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학생이 생기면 용진중학교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

나. 비상상황 발생 사안으로 인한 결시생 성적 처리 등은 용진중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산출한다.

다. 정기고사 중 코로나19 관련 상황별 대처 및 성적처리 방안

분류	대응 방안	후속조치 인정점 부여
■ 확진 받은 학생 발생	■ (학교) 지필평가 중단 ■ (해당 학생) 등교 중지	■ (해당 학생) - 출석인정 및 100% 인정점 부여
■ 실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동거인)이 확진을 받은 학생 ■ 의심증상(발열, 호흡기증상)이 있어 등교증지를 권고 받은 학생	■ (학교) 사태의 심각성 여부를 고려하여 이후 지필평가 중단 혹은 실시 지속 여부 판단 ■ (해당 학생) 등교 중지	■ (해당 학생) 출석인정 및 100% 인정점 부여
■ 고위험군학생	■ (학교) 일반교실 활용 또는 별도 시험실 운영으로 시험기회 제공	■ (해당 학생) - (심각경계 단계) 출석인정 및 100% 인정점 부여 - (관심주의 단계) 질병 결석: 80% 인정점 부여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 (학교) 일반교실 활용 또는 별도 시험실 운영으로 시험기회 제공	■ (해당 학생) - 질병 결석 및 기타결석: 80% 인정점 부여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 등교증지대상 이외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은 학교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

2022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실시 유의사항(교실 게시용)

1. 자리배치: 5×5(3학년) 또는 4×5(2학년)로 배치

※ 책상은 책상 서랍이 교실 정면을 향하도록 돌려놓음

2. 학생 준비물: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검정색, 파랑색 볼펜
(연필로 서답형 기입 및 빨간색 볼펜으로 예비마킹 금지)

3. 시험 일정

교 시	시 간	4월 25일(월)		4월 26일(화)		4월 27일(수)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1	예비령	8:55~ 9:00	국어	영어	수학	수학	
	본 령	9:00~ 9:45					
2	예비령	9:55~10:00	자율	자율	자율	자율	
	본 령	10:00~10:45					
3	예비령	10:55~11:00	과학	사회	기술.가정	기술.가정	
	본 령	11:00~11:45					

* 시험 종료 후 청소 및 종례

5. 유의 사항

- 가. 시험기간 중 무전기, 휴대폰, MP3 플레이어, PMP, 전자계산기 등 절대 소지 금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 갖고만 있어도 0점으로 처리합니다.
- 나. 각 교실의 사물함, 개인소지품 관리 철저히 합니다.
- 다. 학습게시물이나 참고서 등은 교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 라. 시험 시작 전에 교실에 들어와 제 자리에 앉고, 시험 종료 전에 교실에서 나가면 안됩니다.
- 마. 시험 종료 5분 전까지만 답안지 교체를 할 수 있으며 그 후엔 답안지를 교체하지 못합니다.
- 바. OMR카드에 컴퓨터용 수성펜을 사용하여 원을 동그랗게 정확히 마킹해야 정답으로 채점되고, 빨간 볼펜으로만 마킹한 경우나 연필이나 기타 검정, 청색 볼펜으로 마킹하는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며, 정정은 절대 불가합니다.
- 사. 책상 위와 벽면에 낙서는 모두 지워야 합니다.

[별지 1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평가기록

1 기본 원칙

-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교 및 원격수업의 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 ※ 적용 기간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

2 학생 평가 · 기록

- (학생평가) 원격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 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 ※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
- (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산출식)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 필요
- (평가운영 조정)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일정·지필평가 횟수·수행평가 반영비율 조정 등을 용진중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
 - ※ 수행평가를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 확보 노력 필요
 - ※ 수립(변경)된 평가 계획은 평가 실시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학교교육과-2234(22' 2.15.)]’에 따라 <학사운영유형1>은 학년 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 모둠형 수행평가 활용이 가능하고, <학사운영유형2>의 경우 모둠형 수행평가를 자체하고 학년별 고사기간 분리 운영 권장
- (결시생 성적처리)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용진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① 등교증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②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 (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단,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 확인
※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기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볼(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③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학생부 기록)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하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 불가
-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 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
 - *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 결과 보호자 확인 등)
- ※ 확진 후 격리해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 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하나 부득이하게 45일 이내에 선제검사 및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오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평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 (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